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17
----------	------------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제3조의2에 별도 규정되는바, 이와 관련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2. 주요내용

- 단서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p> <p><u>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3조(개방의 원칙) ① ----- ----- ----- ----- ----- -----</p> <p><u><삭제></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3조의2(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u> <u>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u> <u>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u> <u>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u> <u>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